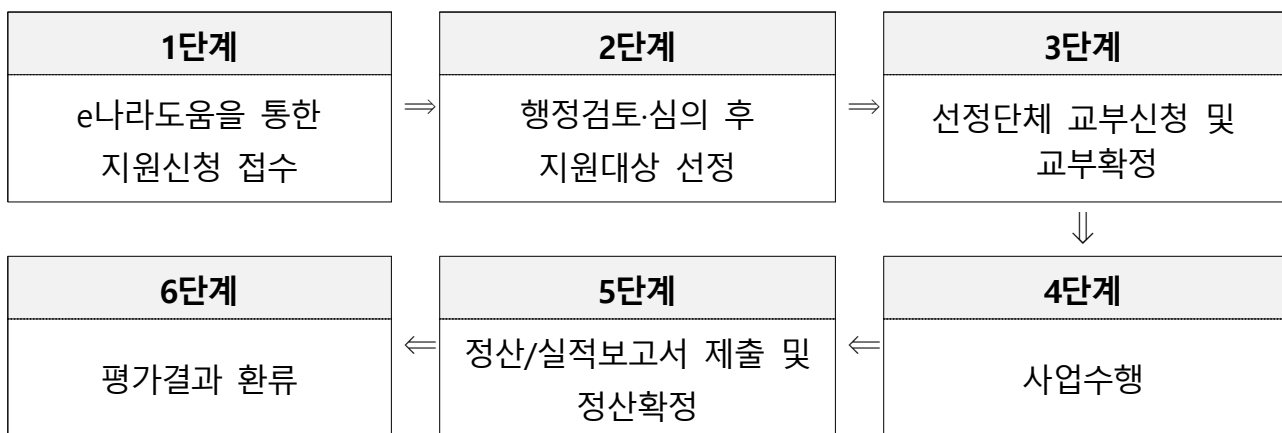


2020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'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' 공모 요강

□ 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0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
- 공모기간 : 2020. 1. 29.(수) ~ 2. 12.(수) 5pm
- 지원대상 사업기간 : 2020. 2. 15.(토) ~ 12. 20.(일)
- 지원내용 :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특별전을 개최하는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의 전시 개최 비용 지원
- 사업목적 : 신진작가의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고

□ 추진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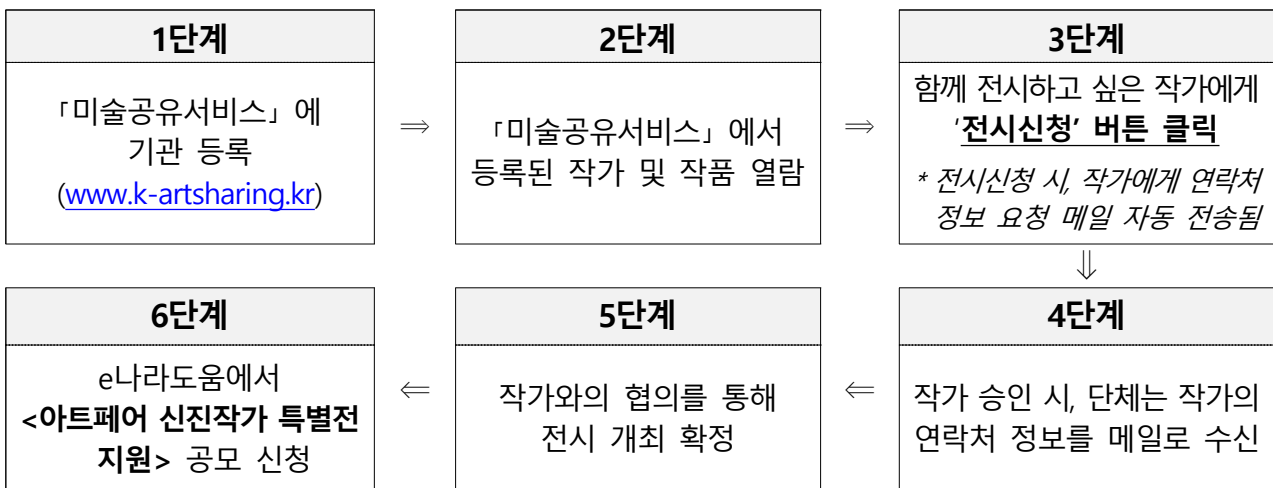
□ 공모내용

구분	내 용
지원신청 자격	■ 아트페어 등에서 신진작가 특별전을 기획하는 민간단체 - 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 - '18년 1월 이전 설립 단체로 '18~'19년에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한 단체 * 지원신청서 내에 개최 실적 증빙 필수

	* 실적 증빙은 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자료 (리플릿, 포스터, 배너, 광고 등)만 인정 가능, 전시 전경 이미지 인정 불가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(www.k-artsharing.kr) 기관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 *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, 주소, 전시정보, 업체 소개 등 등록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에 등록된 작가의 전시 개최 필수 • 신진작가 기준 : '20년 1월 기준 만 45세 이하('75년 1월 이후 출생자)인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• 전시 참여 작가가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상기 누리집에 해당 작가 가입 및 정보 등록 후 지원 가능 * 프로필 이미지, 작가 소개, 작가 이력, 학력, 작품 이미지(5개 이상) 등록 필수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■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 내(內) 신진작가 특별전 부스 전시 지원 - 작품 운송료, 설치비, 보험료, 홍보물 제작비, 행사물품 임차료, 외부 기획자 사례비(지원금의 30% 이내)에 한함 * 상기 지원항목 외(행사장 임차료 등) 지원 불가 * 홍보물 제작 시, <u>해당 특별전을 위한 별도의 홍보물만 지원 가능</u> (예: 아트페어 전체 홍보물(도록 등) 내에 해당 특별전의 내용 부분 수록의 경우 지원 불가)																
지원조건	- 자부담 100만원(지원금의 약 20%) 이상 책정 및 증빙 필수 • 자부담은 인건비, 임차료, 여비 등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 가능 •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은 자부담금에 적용하여 사용 가능 - 최소 10명 이상의 작가로 구성된 주제전으로 기획 필수 * ‘작가 미술장터’ 사업 참여 작가가 30% 이상 포함될 경우 우선 선발 - 해당 특별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택일하여야 함																
지원규모	■ 전시공간 규모별 차등 지급 (* 아래표 참조) - 최대 1,000만원 지원 , 최대 3개 단체 선정 예정 <table><tr><th>공간규모</th><th>100㎡ 미만</th><th>100㎡이상~200㎡미만</th><th>200㎡이상</th></tr><tr><td>지원금</td><td>600만원</td><td>800만원</td><td>1,000만원</td></tr><tr><td>자부담금</td><td>100만원</td><td>15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/tr><tr><td>총사업비</td><td>700만원</td><td>950만원</td><td>1,200만원</td></tr></table>	공간규모	100㎡ 미만	100㎡이상~200㎡미만	200㎡이상	지원금	600만원	800만원	1,000만원	자부담금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	총사업비	700만원	950만원	1,200만원
공간규모	100㎡ 미만	100㎡이상~200㎡미만	200㎡이상														
지원금	600만원	800만원	1,000만원														
자부담금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														
총사업비	700만원	950만원	1,200만원														
선정단체 의무사항	- 선정 단체 대상 사전/사후 워크숍 참석 필수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																

	- 모든 홍보 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및 사업 BI(미술공유서비스) 삽입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, 공식 SNS 운영을 위한 전시 및 작가/작품 정보 제공 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/실적보고서(지정서식) 제출 - '미술시장 실태조사' 매년 응답 필수
지원자격 제외대상	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-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- 국·공·시·도·군립 문화예술기관 -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전 등 -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 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□ 신청절차



□ 공모접수

- 접수기간 : 2020. 1. 29.(수) ~ 2. 12.(수) 5pm
- 접수방법 :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에서 신청
- ※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에서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

- e나라도움 : www.gosims.gr.kr
- e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의 : **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실 1670-9595**
-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필수(개인명의 불가) 및 공인인증서 필요

○ 제출서류 : e나라도움에서만 제출 가능, 이메일 제출 불가

#	제출서류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 * 행사기간이 '20. 2월인 경우 '비예치형' 사업 등록 '20. 3~12월인 경우 '예치형' 사업 등록	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
2	지원신청서(센터 지정서식, hwp) 1부 * 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 공지사항 ▶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	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3	단체 증빙서류 1부 *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	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
□ 공모선정

- 선정방법 : 별도의 심의 없이 지원신청 자격 기준에 의거하여 제출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필수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한하여 e나라도움 상 접수 순으로 **최대 3개** 단체 선정
※ 전시에 작가미술장터 참여작가가 30% 이상 포함될 경우 우선 선발
-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
- 사업 기간 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집행 등록한 금액만 인정됨
※ 이 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추후 환수조치 됨
-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(작가 및 작품의 수 등)가 축소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·조정됨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 개최 실적, 전시 장소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

-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-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,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- ※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규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됨
(예 :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계좌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5년 동안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- 해당 전시 종료 후 동일 주제전으로 타 공모 사업(미술품 대여·전시 지원 등)에 지원 시 선정 우대

※ **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**

(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~4호 참조)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-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끝.